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록

(2023학년도 제08차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6인	0인

1.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11:00~12:00 (회의개최 통보일자: 2023년 11월 15일)

2. 장소: 경북보건대학교 회의실

3. 임원출결사항

○ 참석임원

- 이사 (6인) 편군자, 이병희, 이춘근, 이건호, 김성구, 정경옥
- 감사 (0인)

○ 결석임원

- 이사 (2인) 이상하, 신석기
- 감사 (2인) 이주경, 장나윤

4. 안건

제1안건: 2023학년도 2학기 대학규정 제·개정(안) 심의 · 의결

제2안건: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 의결

5. 회의 내용

(편군자 이사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다.)

법인기획실장 채승용:

○ 재직 이사 8명 중 6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한 후 회순에 따라 국 민의례를 진행하다.

이사장 편군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학년도 제08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의 개 회를 선언합니다.

○ 오늘 이사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편군자 이사장이 2023학년도 제08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 안건을 설명하다.)

○ 의사일정에 의견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 이춘근:

○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이병희:

○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2023학년도 제08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 의사일정에 동의를 표 하다.)

이사장 편군자:

○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의 전원 동의로 2023학년도 제08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확

이춘근 이사	이건호 이사	김성구 이사
이 춘근	이 건호	김 성구

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제1안건: 2023학년도 2학기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심의 · 의결

이사장 편군자:

-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북보건대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대학규정 제·개정을 위해 각 부서 및 학과로부터 규정 제·개정 신청서를 받은 이후 교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이후 대학 홈페이지에 대학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여 대학규정 개정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이후 대학규정에 관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경북보건대학교 평의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 오늘 이사회에서는 대학 평의원회에서 제정된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2023학년도 2학기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개정에 관해서 채승용 법인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획실장 채승용:

- 준비된 자료는 대학 규정 개정(안)을 최종 심의한 대학 평의원회의 회의록과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규정 전문입니다.

(법인기획실장이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절차와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다.)

(법인기획실장과 여러 이사들이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개정(안)에 관해서 논의 하다.)

이 사 정경옥:

- 법인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융합전공 설치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과 학생들의 졸업인증제 요건기준에 관해 현재 대학 운영에 맞게 학칙을 현행화 하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95조 미반영에 대한 내용을 '교직원보수및수당규정'에 잘 반영하여 개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업적평가 규정에서 미비했던 연구활동실적에 대한 개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을 발의 합니다.

이 사 이건호:

- 정경옥 이사님의 발의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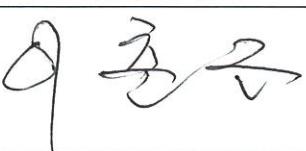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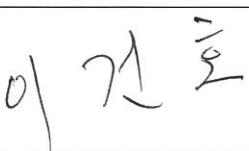
- 재정합니다.

(참석 이사 전원이 2023학년도 2학기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이사장 편군자:

- 정경옥 이사님께서 발의하신 2023학년도 2학기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서 이건호 이사님의 동의와 김성구 이사님의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 전원이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 따라서 아래의 경북보건대학교 규정 개정(안)이 참석하신 이사님의 전원 동의로 원안

이춘근 이사	이건호 이사	김성구 이사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관련규정	현행	개정																																																																																
학칙	제26조의4(융합전공 설치·운영) <신설> 제37조(시험)① ~ ③<생략> ④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이 함께 실시되는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전체수업 각각의 총 수업일수 중 1개라도 1/4기간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도,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38조(추가및재시험)① 질병, 체육특기자 학사 특례 인정 대상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6조의4(융합전공 설치·운영) ① 융합전공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어느 하나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속하지 않으며, 대학내 둘 이상의 학과(부) 또는 국내외 대학과 서로 연계·융합하여별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을 설치·운영 할수 있다.. ②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시험)① ~ ③ <생략> ④ 삭제																																																																																
	제38조(추가및재시험)① 질병, 체육특기자 학사 특례 인정 대상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8조(추가및재시험)① 질병, 체육특기자 학사 특례 인정 대상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2조(졸업)① ~ ⑤ <생략> ⑥ 제④항의졸업인증제 요건기준 중 “직무 및 글로벌 역량” 중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한 졸업유보자는 다음 학년도 이내에 직무 및 글로벌 역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수료자로 처리된다. ⑦ <생략>	제42조(졸업)① ~ ⑤ <생략> ⑥ 제④항의졸업인증제 요건기준 중 “창의적 직무 & 글로컬소통 역량” 중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한 졸업유보자는 다음 학년도 이내에 “창의적 직무 & 글로컬소통 역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수료자로 처리된다. ⑦ <생략>																																																																																
	제46조(유급)<생략> 2. 연간 평균평점이 1.0 이하인 자	제46조(유급)<생략> 2. 연간 평점평균이 1.0 이하인 자 부 칙 제2조(경과규정) 본 학칙 제37조 4항은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교직원보수 및수당규정	제24조(휴직및징계기간보수)① ~ ④ (생략) ⑤ 징계에 의한 감봉 기간동안은 보수월액의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추가) ⑥ (생략)	제24조(휴직및징계기간보수)① ~ ④ (생략) ⑤ 징계에 의한 감봉 기간동안은 보수월액의1/3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직원의 경우는 보수월액의1/10을 감하여 지급한다. ⑥ (생략)																																																																																
직원인사 관리규정	제3조(직급의구분) ① 일반직의 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직급 직렬</th> <th>3급</th> <th>4급</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r> </thead> <tbody> <tr> <td>행정 직</td> <td>처장</td> <td>부장 (국장)</td> <td>차장 (실장)</td> <td>과장</td> <td>과장대 리</td> <td>계장</td> <td>-</td> </tr> <tr> <td>사서 직</td> <td>처장</td> <td>부장 (국장)</td> <td>차장 (실장)</td> <td>과장</td> <td>과장대 리</td> <td>계장</td> <td>-</td> </tr> <tr> <td>전산 직</td> <td>처장</td> <td>부장 (국장)</td> <td>차장 (실장)</td> <td>과장</td> <td>과장대 리</td> <td>계장</td> <td>-</td> </tr> <tr> <td>기술 직</td> <td>처장</td> <td>부장 (국장)</td> <td>차장 (실장)</td> <td>과장</td> <td>과장대 리</td> <td>계장</td> <td>-</td> </tr> </tbody> </table>	직급 직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직	처장	부장 (국장)	차장 (실장)	과장	과장대 리	계장	-	사서 직	처장	부장 (국장)	차장 (실장)	과장	과장대 리	계장	-	전산 직	처장	부장 (국장)	차장 (실장)	과장	과장대 리	계장	-	기술 직	처장	부장 (국장)	차장 (실장)	과장	과장대 리	계장	-	제3조(직급의구분) ① 일반직의 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직급 직렬</th> <th>3급</th> <th>4급</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r> </thead> <tbody> <tr> <td>행정 직</td> <td>처장/ 국장</td> <td>실장</td> <td>부처장 /센터 장</td> <td>팀장</td> <td>과장</td> <td>계장</td> <td>-</td> </tr> <tr> <td>사서 직</td> <td>처장/ 국장</td> <td>실장</td> <td>부처장 /센터 장</td> <td>팀장</td> <td>과장</td> <td>계장</td> <td>-</td> </tr> <tr> <td>전산 직</td> <td>처장/ 국장</td> <td>실장</td> <td>부처장 /센터 장</td> <td>팀장</td> <td>과장</td> <td>계장</td> <td>-</td> </tr> <tr> <td>기술 직</td> <td>처장/ 국장</td> <td>실장</td> <td>부처장 /센터 장</td> <td>팀장</td> <td>과장</td> <td>계장</td> <td>-</td> </tr> </tbody> </table>	직급 직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직	처장/ 국장	실장	부처장 /센터 장	팀장	과장	계장	-	사서 직	처장/ 국장	실장	부처장 /센터 장	팀장	과장	계장	-	전산 직	처장/ 국장	실장	부처장 /센터 장	팀장	과장	계장	-	기술 직	처장/ 국장	실장	부처장 /센터 장	팀장	과장	계장	-
직급 직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직	처장	부장 (국장)	차장 (실장)	과장	과장대 리	계장	-																																																																											
사서 직	처장	부장 (국장)	차장 (실장)	과장	과장대 리	계장	-																																																																											
전산 직	처장	부장 (국장)	차장 (실장)	과장	과장대 리	계장	-																																																																											
기술 직	처장	부장 (국장)	차장 (실장)	과장	과장대 리	계장	-																																																																											
직급 직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직	처장/ 국장	실장	부처장 /센터 장	팀장	과장	계장	-																																																																											
사서 직	처장/ 국장	실장	부처장 /센터 장	팀장	과장	계장	-																																																																											
전산 직	처장/ 국장	실장	부처장 /센터 장	팀장	과장	계장	-																																																																											
기술 직	처장/ 국장	실장	부처장 /센터 장	팀장	과장	계장	-																																																																											

이춘근 이사	이건호 이사	김성구 이사

관련규정	현행			개정		
장의증점 교원업적 평가규정	제7조(교원활동성과평가) (생략)			제7조(교원활동성과평가) (생략)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학술활동 실적	최고 15점	(생략) ☞[참고] (생략) ☞[참고] (생략) (신설) (신설)	학술활동 실적	최고 15점	(생략) ☞[참고] (생략) ☞[참고] (생략) ☞[참고]논문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업은 학내기관을 통하여 관리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함 -교원학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강의실/실습실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 -1개 학과 이상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 -대학의 학사제도 개선 및 시범운영(취업 제고 등)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의 산학협력(인적교류, 물적교류 등) 수행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 수행 ☞[참고]인정률은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구분없이 단독 100%, 저자수2인 70%, 저자수3인 50%, 저자수4인 이상 50%미만으로 함
산학협력 증점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7조(교원활동성과평가) (생략)	제7조(교원활동성과평가) (생략)	제7조(교원활동성과평가) (생략)	제7조(교원활동성과평가) (생략)	제7조(교원활동성과평가) (생략)	제7조(교원활동성과평가) (생략)
	학술활동 실적	최고 10점	(생략) ☞[참고] (생략) ☞[참고] (생략) (신설) (신설)	학술활동 실적	최고 10점	(생략) ☞[참고] (생략) ☞[참고] (생략) ☞[참고]논문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업은 학내기관을 통하여 관리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함 -교원학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강의실/실습실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 -1개 학과 이상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 -대학의 학사제도 개선 및 시범운영(취업 제고 등)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의 산학협력(인적교류, 물적교류 등) 수행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 수행 ☞[참고]인정률은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구분없이 단독 100%, 저자수2인 70%, 저자수3인 50%, 저자수4인 이상 50%미만으로 함

이춘근 이사	이건호 이사	김성구 이사

관련규정	현행			개정		
	제5조(직무활동평가기준) (생략)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중점 교원업적 평가규정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참고] (생략) ☞[참고] (생략) (신설) (신설)	(생략) ☞[참고] (생략) ☞[참고] (생략) ☞[참고] 논문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업은 학내기관을 통하여 관리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함 -교원학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강의실/실험실 환경 개선 등 교육여 건 개선 -1개 학과 이상의 교육과정 개발 (개편) 및 운영 -대학의 학사제도 개선 및 시범 운 영(취업 제고 등)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의 산학협력(인적교류, 물적교류 등) 수 행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 수행 ☞[참고] 인정률은 주저자, 교신저 자, 공동저자 구분없이 단독 100%, 저자수2인 70%, 저자수3인 50%, 저자수4인 이상 50%미만으로 함

제2안건: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 의결

이사장 편군자: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안건인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 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 의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북보건대학교에서는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한 바 있습니다.

(경북보건대학교 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설명하다.)

○ 오늘 이사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여야 합니다.

○ 그러면 오창훈 행정지원처 팀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처팀장 오창훈:

○ 준비된 자료는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입니다.

(행정지원처과장이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관해서 설명하다.)

- 본예산 : 12,284,462천 원

이춘근 이사	이건호 이사	김성구 이사

- 추경 예산 : 11,887,098천원

- 증감 : 본예산대비 감 397,364천원

이사장 편군자:

○ 이상으로 오창훈 행정지원처팀장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 김성구:

○ 행정지원처팀장의 설명과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지난해와 올해 전임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시적인 지출이므로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 등록금회계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간호학과 실험실습비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 지출 증가로 힘든 재정임에도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 사항 및 재정변동 규모를 보았을 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원안대로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 이건호:

○ 저 역시도 김성구 이사님의 발의에 동의합니다.

이 사 이병희:

○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다.)

이사장 편군자:

○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이 김성구 이사님의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에 대해서 이건호 이사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며 이병희 이사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 전원이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의 전원 동의로 2023회계연도 경북보건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사장 편군자:

○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참석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을 호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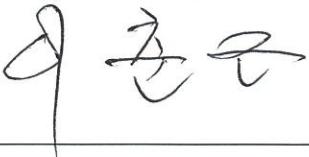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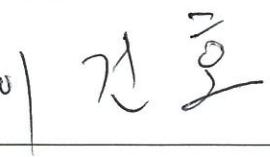
이 사 이병희:

○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으로 이춘근 이사, 이건호 이사, 김성구 이사를 호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병희 이사의 제안에 정경옥 이사의 동의, 이건호 이사의 재청과 참석이사 전원이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서명할 임원 호선에 동의를 표하다.)

이사장 편군자:

○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으로 이춘근 이사, 이건호 이사, 김성구 이사가 호선되

이춘근 이사	이건호 이사	김성구 이사
		

었음을 선언합니다.

○ 이것으로 2023학년도 제08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이 사 편 군 자 편군자

이 사 이 병 희 (1163)

이 사 이 춘 근 이춘근

이 사 이 건 호 이건호

이 사 김 성 국 김성국

이 사 정 경 옥 정경옥